



관세청  
KOREA CUSTOMS  
SERVICE

# 수입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

2012. 5.

관세청

Korea Customs e-Clearance System  
**UNI-PASS**

South of Korea

# 목차

- I 추진 배경
- II 추진 경과
- III 제도 기본원칙
- IV 세부 운영절차
- V 제도 시행방안
- V 물류당사자 준비사항

# I. 추진 배경

## 무역환경 변화

- 미국 9.11테러 이후 물류보안의 핵심수단으로 **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가 글로벌 규범화 추세**
  - WCO에서 SAFE Framework를 채택하고 적하목록 사전신고 권고
  - \* '05.6월 정식 채택, 우리나라를 포함한 144개국이 이행합의서 제출
- 우리나라 **수출액의 약 50%이상**이 제도시행 국가로 수출되는 상황에서 **국내 무역관행이 변화되지 않으면 수출차질 우려**
  - \* 미국 · EU · 중국 · 캐나다 등 제도 시행국가로 수출 비중 54%를 차지('11년, 금액기준)

## 필요성

- 적하목록에 대한 **충분한 심사**로 **위해물품 차단 및 국민건강 보호**
  - 검사대상화물 선별(C/S)의 정확성 · 효율성 제고
- 화물관리번호 조기 생성, **입항전 수입신고 활성화**로 **물류신속화 지원**
  - 정상화물의 경우 보세구역 반입없이 하(선)기 즉시 반출

## Ⅱ. 추진 경과

- **적하목록 사전제출을 통한 물류프로세스 개편방안 수립 ('10.8)**
- **적하목록 고시개정(안) 입안예고 및 의견수렴 ('10.11)**
- **제도 시행준비를 위한 민관 합동 T/F팀 구성 ('10.12~)**
- **국무총리실 규제심사 ('11.2), 적하목록 고시 개정 ('11.3)**
- **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운영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('11.6, '11.10)**
- **해상·항공 수출적하목록 통합테스트('12.3) 및 시행 ('12.4.1)**
- **항공 수입적하목록 통합테스트('12.5) 및 시행 ('12.6.1예정)**



## Ⅲ. 제도 기본원칙

### 일반 원칙

- 항공사는 **적하목록 제출시기**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, 실제 적재한 화물의 목록과 부합되도록 적하목록을 작성·제출
- 항공사는 미국·EU와의 상호주의 입장을 견지하여 원칙적으로 **해외 출항지 적하목록(House B/L) 전송체제로 전환**

### 법적 책임

- 항공사는 수입화물에 대한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로서 **제출시기 위반 및 신고내용의 정확성**에 대하여 법적 책임
- 다만, 국내 화물운송주선업자는 **혼재화물적하목록의 작성책임자**로서 **수출화물에 대한 적하목록의 작성·정정** 등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

# IV. 세부 운영방안

## 1. 적하목록 제출시기

구 분	현 행	개 정
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원칙) 입항 24시간 전</li> <li>▪ (근거리) 입항 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원칙) 적재 24시간 전</li> <li>▪ (근거리) 적재항 출항 전</li> </ul>
항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입항 전 (하기전 추가제출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원칙) 입항 4시간 전</li> <li>▪ (근거리) 적재항 출항 전</li> <li>▪ (특송화물) 입항 1시간 전</li> </ul>

✓ 근거리 : 중국, 대만, 홍콩, 일본, 러시아 극동지역

예시  
(항공)

런던 기적



1차 제출  
입항 4시간 전



홍콩 기적



2차 제출  
적재공항 출항전



인천공항 입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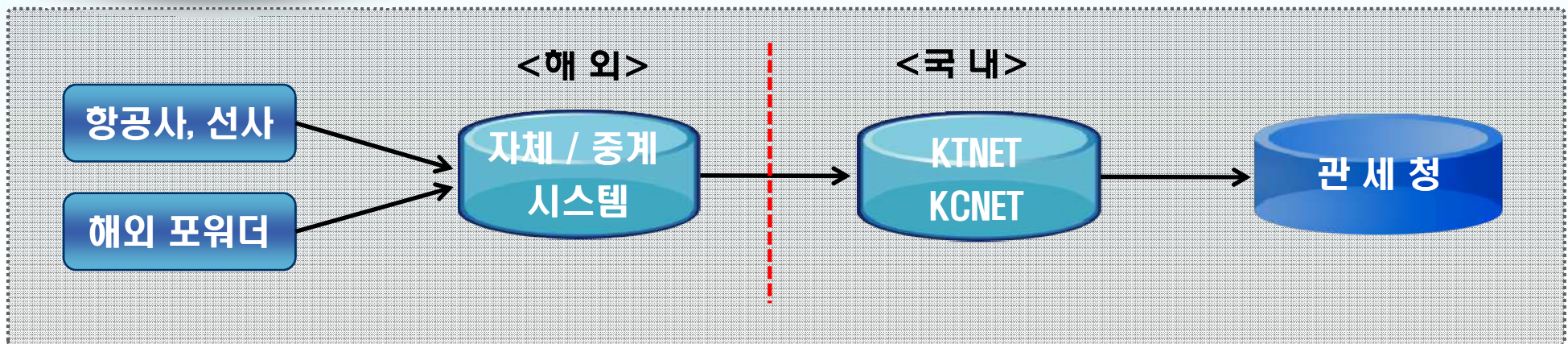


## 2. 적하목록 작성 제출

### 2-1. 작성 원칙

- 적하목록 항목 및 작성은 관세청장이 정한 적하목록 실행지침서에 의함
- 항공사는 전자문서실행지침서에서 규정한 항목명, 정의, 조건, 규격 등에 유의하여 적하목록 작성·제출

### 2-2 전송프로세스



### 3. 적하목록 정정

일반  
원칙

- 항공사가 수입적하목록의 법적책임자로서 정정 주체
- 다음의 적하목록 정정사유 및 정정항목에 해당하는경우 서류제출 대상
  - 1) 적하목록 누락에 따른 B/L 추가
  - 2) 수하인(화주), 화물운송주선업자
  - 3) 화물 구분 및 화물 속성
  - 4) 기타 세관장이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예외  
사항

- 혼재화물적하목록의 경우 항공사 위임시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정정
  - ✓ 단, 과태료 부과대상의 경우에는 항공사만 정정 가능
- 다음의 경우 법규준수도(AEO) 또는 법규수행능력 평가점수에서 제외
  - ✓ 해외에서 발행된 B/L에 따라 수입적하목록의 수하인 · 통지처 주소 정정
  - ✓ 항공기 출항익일 세관근무시간까지 수출적하목록 일부삭제 또는 중 · 수량 정정



## 4. 적하목록 취하

### 일반 원칙

- 항공사가 제출한 적하목록이 관세청의 적하목록시스템에(KMS)에 접수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취하 불가
- 적하목록을 취하할 경우 취하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

### 예외 사유

- 다음의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유를 심사하여 취하 승인
  - ✓ 기상악화, 사고 등으로 인한 항공기의 미입항
  - ✓ 항공기의 운항스케줄 변경
  - ✓ 적하목록 관리번호(MRN) 오전송
  - ✓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## 5. 하기신고

### 일반 원칙

- 적하목록 제출이후 화물을 하역하고자 하는 경우 화물터미널 반입시 까지 하기신고서 제출
- 항공사 또는 중계사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하기장소, 하기계획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항편별 적하목록 정보 제공
- 하기물품이 적하목록과 상이한 경우 하기결과보고서 제출

### 하기장소

- 항공사는 하기장소 결정원칙에 대하여 명확히 공지
  - ① 화물운송주선업자가 House B/L별 신청
  - ② 중계시스템의 포워드별 D/B에서 자동 신청
  - ③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항공사터미널로 기재
    - ✓ 하기장소는 공항 항역내 보세구역으로 제한(예외 김포)

## 6. 화물관리

### 일반 원칙

- **입항전 수입신고 및 보세운송신고 물품은 터미널 반입 즉시 반입신고**
  - ✓ 하기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**반출전에 반출신고**
- **하기결과 이상화물은 이상결과보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상사유를 규명하여 적하목록 정정 등의 절차를 걸쳐 하기장소 반입**

### 중점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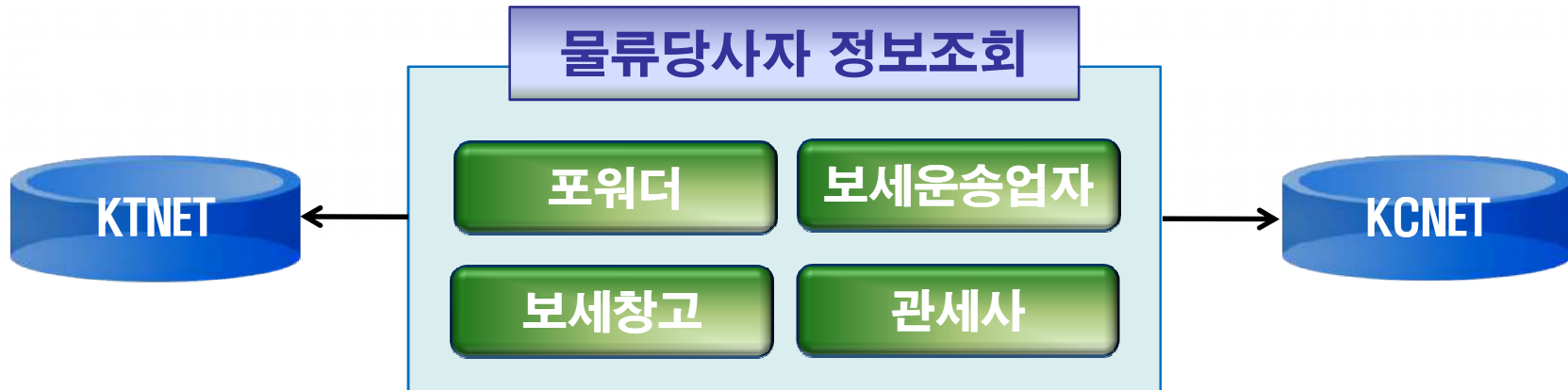
- **적하목록 제출 이후 B/L추가건에 대하여 엄격히 관리**
  - ① **법 제276조 및 과태료 세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**
  - ② **세관검사장에 배정, 전량 화물검사 실시**
    - ✓ 다만, 제도시행 이후 **시스템 안정화** 등을 고려하여 **별도 공지**

## 7. 물류부가서비스

### 일반 사항

- 중계사업자 경쟁체제 전환에 따라 **수입적하목록 전송경로 이원화**
  - ✓ ①KT NET : 아시아나 등 45개사, ②KCNET : 대한항공 등 27개사
- 개별 중계사업자는 **적하목록 정보조회 · 활용등 물류부가서비스 제공**
  - ✓ 물류당사자는 개별 중계사업자와 물류부가서비스 이용 계약

### 업무절차



- ✓ 정보활용 : 하기장소신청, 반입신고, 보세운송신고, 수입신고

## V. 제도 시행방안

### 기본방향

- (시행시기) 항공 수입적하목록 통합테스트 분석 후 ‘12.6.1 시행예정
- (경과조치) 제출시기 위반에 따른 벌금부과는 ‘12.9.30까지 유예
- (적용대상) 인천공항세관 및 김포세관
  - ✓ 김해,제주 기타 공항세관의 경우 제출시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, 해외출항지 (포워더) 적하목록 전송원칙 준수

### 처벌규정

- (제출시기 위반) 관세법 제135조제2항 및 제276조제 3항
  - ✓ 1천만원 이하의 벌금(과실인 경우 200만원 이하)
- (B/L누락) 관세법 제277조제4항 및 과태료부과세칙 별표3
  - ✓ 100만원이하 과태료(1차 10만원, 2차 30만원, 3차 50만원)



# V. 물류당사자 준비사항

## 1. 물류당사자

### <항공사>

- '12.5.20까지 해외출항지(포워더) 적하목록 전송비율 90% 이상 제고
- 적하목록 전송, 하기장소 신청 등 업무프로세스 확정 및 공지

### <포워더, 보세창고, 보세운송자, 관세사>

- 적하목록 정보 조회·활용을 위한 개별 중계사업자 회원가입 및 통합테스트 참여

## 2. 중계사업자

- 사용자 시스템과 연계한 적하목록 통합테스트 수행('12.5.1~5.30)
- 물류당사자 대상 물류부가서비스 제공(준비) 및 회원가입 안내
- 통합테스트 수행, 고객 응대를 위한 별도 상황대응팀 운영
  - ✓(KTNET) 고객센터 : 1566-2119, 업무지원 : 02- 6000-2762(2831)
  - ✓(KCNET) 고객센터 : 1899-1399, 업무지원 : 02-3447-2085(2074)